

I. 머리말

새로운 국제교역 환경의 형성과 대응과제



곽태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

UR타결이후 새로이 등장한 WTO체제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경제질서의 일대변혁으로 기록될 수 있다. 즉 WTO체제는 세계각국을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국경을 허물어 버리고 국경없는 경쟁체제로 몰아넣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무한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UR이후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환경, 노동, 경쟁정책, 기술정책, 등에 관련된 이른바 뉴라운드는 앞으로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 각국 특히 후진국의 생산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나아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 추이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유럽의 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 형성,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의 결속 등과 같은 세계경제권의 불러화와 다극화는 새로운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보호주의의 강화를 태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난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이 글은 이들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조감하고 나아가 우리의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새로운 국제교역환경의 형성

1. WTO체제의 출범

■ 目 次 ■

- I. 머리말
- II. 새로운 국제교역환경의 형성
 - 1. WTO체제의 출범
 - 2. 뉴 라운드의 등장
 - 3. 세계경제권의 불러화·다극화
- III. 대응과제

1) 의의

작년 4월 12~15일 모로코의 마라카쉬에서 세계 120여개국의 각료들이 모여 UR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그동안 7년동안이라는 다자간 협상사상 최장기간의 협상을 끌어온 UR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한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라는 새로

운 국제교역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WTO는 전후 세계무역질서의 핵을 이루어 왔던 GATT를 대신하여 앞으로 UR의 이행과 함께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규범을 제시하여 21세기의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즉 WTO는 앞으로 국제무역의 UN으로 지칭될 수 있을 만큼 과거의 GATT와는 달리 국제무역질서를 강력하게 조정관장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전후 1948년 GATT체제가 창설된 이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국의 경제력이 크게 팽창하고 또한 한 국제교역상품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종래의 국제교역규범체계를 가지고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전후 GATT의 출범 당시에는 선후진국 간 경제력의 격차가 극심하여 선진국간의 무역에만 자유무역주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후진국들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하여 자유무역주의를 차별적으로 적용시켰으나 그동안 후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선후진국간 경제력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오히려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종래와 같은 선후진국간 차별적 자유무역주의의 적용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국제교역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상품교역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상품이외에 서비스교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단순히 상품교역을 주 대상으로 국제교역규범을 만들었던 GATT체제는 이 새로운 교역환경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기가 성장을 하고 나

면 아기때에 알맞던 무늬나 색상을 바탕으로 한 옷이나 장난감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성장한 다음에 그 단계에 알맞는 새로운 단장이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로 볼 수 있다. 즉 GATT체제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변화된 새로운 세계경제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교역규범체계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WTO는 GATT를 대체하는 체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출범한 WTO체제는 세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난 70~80년대 이후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온 보호주의적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그 방향을 바꾸어 놓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의 진중상주의 또는 신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불리워져 오던 세계무역질서가 UR의 타결과 함께 전세계각국이 개방의 물결속에 다같이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범세계적 자유무역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WTO체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강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후 GATT체제하에서도 다자주의의 원칙이 강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함께 쌍무주의(Bilateralism)가 크게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그것은 곧 GATT체제의 약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WTO체제는 국제통상문제를 양자협의보다는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다루는 규범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번째로 WTO의 출범은 각국의 세계화의 촉진을 통한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세계주의(Globalism)의 시작을 뜻한다. 깊은 통합이란 종래에 강조되었던 단순한 무역장벽의 철폐단계를 넘어 무역, 투자,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각국의 상호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세계적인 이해와 결속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내용

WTO의 기구로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가 있으며 각료회의 산하에 일반이사회를 두고 있다. 각료회의는 2년마다 1회씩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일반이사회는 년중 수시로 회의를 갖고 각종현안 과제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을 두고 각 해당분야의 현안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WTO협정은 상품교역협정, 서비스교역일반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분쟁해결절차,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및 기타협정(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협정, 낙농협정, 우육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WTO체제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 첫째는 적용대상범위를 확장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왔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정부조달, 항공, 낙농, 우육, 등을 포함하여 국제교역규범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종래의 GATT체제와 크게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분쟁해결절차를 명료하게 설정한 것이다. 즉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종래 GATT체제하에서는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절차 및 능력을 대폭 확충강화는 명료한 규정을 두어 모든 분쟁을 반드시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는 양국간에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DSB내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통상

법 슈퍼301조와 같은 한 나라의 일방적 무역보복절차의 벌동은 억제되게 되었다.

셋째로 협정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WTO체제하에서는 어느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보복조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서로 교차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른바 교차보복을 허용하여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교차 보복조치의 허용은 과거 GATT체제하에서는 상품분야에 한해서만 허용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교육시장의 개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판정이 나는 경우에 회원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과거 GATT체제하에서는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국가라도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합의체하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강대국이 이러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GATT의 합의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일을 소모하는 등 비효율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합의체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수결표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시한도 설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끝으로 각회원국이 투명한 무역정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였다. WTO내에 무역정책검토기

구(TPRM)를 설립하여 각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를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여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국이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그것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일관성 있는 다자주의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보호주의에로의 회귀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2. 뉴라운드의 등장

WTO는 이제 각국의 비준을 거쳐 일단 출범을 하였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 등에 관련된 뉴라운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협상문제는 UR협상때 제기된 것으로 각분야별로 내용이 복잡하고 또 국가마다 여건이 상이하여 이해관계가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의견접근을 보기 어렵우며 따라서 그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환경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무역규제조치의 규범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라운드가 등장한데는 두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지구환경을 복구보전하여 바람직한 인간의 생존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무역에 관련된 사항이다. 즉 각국의 환경규제가 서로 상이하여 기업의 환경비용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의 격차를 초래하여 불공정무역의 근원이 된다는데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설정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라운드는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정해 두고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는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종래의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무역을 규제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이룬다. 따라서 환경라운드의 핵심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환경규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환경규제의 비용을 각국의 기업이 부담하여 내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고 결국 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라운드의 주요쟁점사항으로서는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에 대한 규제, 국제환경규격(ISO-14000)과 환경마크제도, 제조업자책임(Product Liability) 강화문제, 탄소 /에너지세 도입문제, 등이 있다.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무역규제는 환경을 저해하는 공정이나 생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된다. 국제환경규격은 환경경영, 환경밸링, 환경성능평가, 등 생산전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한 사업체에서 부여되는 인증을 의미하며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환경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거나 경고마크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마크부여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자책임제도란 제품의 포장, 재이용, 폐기물의회수, 제품의 안정성, 등을 규제하여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끝으로 탄소 /에너지세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규제조치들은 전체적으로는 생산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므로 후진국의 수출에는 적지않은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 노동

WTO내에서 논의될 노동문제는 노동기준을 포함한 국내노동법규인데 이것 역시 선후진국간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 WTO최종마무리 단계에서도 선진국들은 노동문제를 WTO협정문에 포함시켜 무역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후진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노동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하지 못하고 다만 WTO의 새로운 의제로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일단락지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후발개도국들이 근로자의 기본권과 복지의 희생을 통한 불공정한 노동조건하에서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를 비롯한 후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이러한 주장은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위장된 새로운 보호 무역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기본적인 인권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라마다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국제적 노동규약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의 근로조건에 대한 선진국의 개선주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주로 ILO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아동 근로금지, 결사의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차별금지, 등으로 집약될 것이다.

3)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작년 4월 마라카쉬회의에서 미국 대표와 유럽연합(EU)대표에 의해 처음으로 통상의제로 공식 제안되었다. 경쟁정책이 이와같이 국제통상의제로 등장한 것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것이 국가의 고유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 온데 대한 커다란 방향의 전환으로 환경, 노동 등과 함께 앞으로 중요한 통상이슈중의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즉 그것은 UR이후 경제의

범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한 국가간 마찰이 증대될 것이므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을 설정하여 기업의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이른바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쟁조건의 평준화란 각국이 서로 다른 경쟁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초래될 경쟁력의 차이를 제거하여 국제경쟁에서 공정경쟁원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주요 쟁점사항으로서는 수직협정, 수평협정, 유통체제에 대한 정부규제, 반덤핑조치, 독점지배력의 남용 등이 있다.

수직협정이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혹은 제조업체와 부품조달업체가 협의에 의하여 거래의 일방 또는 쌍방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통상이슈로 제기된 배경은 그것이 경쟁자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반경쟁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외국상품과 기업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앞으로 이 수직협정의 논의의 촛점은 제조업체가 지역별로 대리점을 지정하는 지역분할(Exclusive Territories) 협정과 자사로부터만 제품을 조달받게 하는 배타적거래(Exclusive Dealings) 협정이다.

수평분업이란 경쟁기업들이 판매량, 가격,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협정당사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고정, 산출량제한, 입찰담합 등과 같은 카르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금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통체제에 대한 정부규제로서는 유통업체에 대한 허가제도,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것이 외국유통업체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들

조항들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원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역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을 방지하고 동시에 덤플링을 규제할 수 있도록 덤플링 행위자체를 다시 분류하여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것에 한해서만 규제하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서 제기된 것이다.

독점기업 특히 공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그것을 규제는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기술

기술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환경, 노동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술개발정책이 보조금 등을 통하여 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규범을 설정 하자는 것이다.

기술정책으로는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R & D에 대한 보조금지급, 정부출연 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무역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R & D지원문제는 UR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국가간의 지원수준과 범위에 격차가 커서 국제적 마찰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R & D활동의 개방에 대해서는 국가간 공동연구시 협력과 성과의 분배 및 이용 등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공정한 연구환경 및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요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다.

3. 세계경제권의 블럭화, 다극화

최근 세계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권의

블럭화와 다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블럭화란 몇몇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협정을 맺어 그것을 역내국에 대해서는 호혜적으로 적용하고 반면 역외국 즉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권 등이 그것이다. 반면 경제의 다극화란 전통적으로 세계경제권이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2개그룹으로 나누어졌으나 개도국은 다시 자원부국(OPEC)과 자원빈국, 신흥공업국(NICs), 후발개도국 등으로 나누어지고 선진국도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경제강세국과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경제약세국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말한다.

세계경제권의 블럭화는 역내무역을 우선하고 역외국과의 무역은 차별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편 경제권의 다극화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증대시켜 무역마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계교역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91년 1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이른바 유럽동맹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독일, 프랑스 등 기존 EC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국을 합한 총 12개국으로 구성된 인구 3억 7,500만, 총GDP 6조8,00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이다. 유럽연합은 상품, 자본, 용역 및 노동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을 통하여 역내국가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 및 유럽단일통화의 발행과 사용으로 단일 경제통화동맹을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한 것으로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 인구 3억 6,000만, 총GDP 6조 2,000억달러규모의 EU다음으로 큰 경제블럭이

다. 즉 NAFTA는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투자장벽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역외국에 대한 차별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멕시코와 북미시장에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북미 지역에 이와 같이 거대한 경제블럭이 형성된 것은 EU의 출범에 따른 유럽경제의 결속강화와 일본경제의 부상으로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크게 약화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권에서도 블럭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이 그것이다.

ASEAN은 1967년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태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협력체이며 지난 92년에는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의 창설에 합의하여 역내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특히 아세안공업프로젝트(AIP : Asean Industrial Project)의 실시를 통해 역내의 공업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이른바 성장의 삼각지대(TGA : Triangle Growth Area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Riau지역과 말레이지아 Johor주를 말함)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접국가간의 부존자원과 자본 및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성장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APEC는 1990년 3월에 결성된 것으로 한국, 일본 등 국동지역국가들과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태국 등 ASEAN국가들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국가들을 총망라한 12개국으로 형성된 세계최대의 단일 지역경제협의체이다. 그러나 APEC은 여타 경제블럭과는 달리 역내의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하나의 경제통합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한 경제협의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PEC은 성장과 경제발전단

계에 격차가 심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의 경제통합체의 형태를 갖추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에 이와 같은 거대한 경제블럭이 형성되려고 하는 것은 이지역의 부존자원과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 지역이 바로 21세기의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I. 대응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WTO의 출범, 뉴라운드의 등장, 세계경제권의 블럭화와 다극화, 등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국제 교역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설립을 위한 국제규범이 설정됨에 따라 세계속의 한 가운데로 모두가 뛰어들게 되고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일대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방화의 큰 흐름속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세계화로 에너지를 집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블럭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는 인접경제권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타경제권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상외교력을 십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와 기업의 각대응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정부정책의 핵심은 국가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일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개입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이른바 시장실패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가려내어 그것에

한해서만 정부개입을 잔존시키되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일임하도록 하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경제에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개발과 정보확충망의 건설과 같은 기술·정보의 인프라구축에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개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제 우리가 OECD에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나 무역규모나 모두 선진국권에 가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개도국적 수동적자세를 탈피하여 우리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특히 UR의 이해뿐만 아니라 뉴라운드의 추진에 있어서나 경제블럭화에 대한 대응 등 모든 국제통상의 교면에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으로서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정부의존적 자세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른바 홀로서기 하나에 오로지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것에 실패하면 결국 살아

남지 못한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내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는 차원이었지만 이제는 경쟁상대가 단순한 이웃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도처에서 몰려오는 즉 얼굴 모르는 기업들이란 점에 전략의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개방화와 기업의 세계화를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 등 뉴라운드의 등장은 곧 기업들의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므로 생산의 효율성제고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발개도국들의 저가생산에 의한 국내진출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생산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핵심적 과제는 우리가 모두 전세계속의 무한경쟁의 틀속에 던져져 있다는 것과 따라서 국내·국외와 같은 종래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여기에 모든 정책과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소득은 정당하게, 소비는 알뜰하게